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소방방재청공고 제2005 - 62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8. 17 ~ 9. 6
- 관련문의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Tel.02-3703-5247)
-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http://www.nema.go.kr>/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상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종합정밀점검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 **2. 주요내용**

-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연1회 실시하되, 종합정밀점검대상의 경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달에, 그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상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달 까지 실시하도록 하며,
- 다.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년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u>	<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u>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u>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u>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b>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u>손실보상청구서</u>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단서신설&gt;</p> <p>1. · 2. (생략)</p> <p>②시·도지사는 <u>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b>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b>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p> <p><b>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b> ①-----</p> <p>-----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손실보상청구서를 포함한다)-----</p> <p>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p> <p><b>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b> ①-----</p>

법령정보

## ACT INFORMATION

##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현행	개정안
	<p><u>법률]</u>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1.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 4. (생략) ③ ~ ⑥ (생략)	1. 「건축법 시행규칙」 ----- ----- -----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p><b>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 · 완공신고 등)</b>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u>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u>에 다음 각호의 <u>서류</u>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단서신설&gt;</p>	<p><b>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 · 완공신고 등)</b> ①----- ----- ----- ----- ----- ----- ----- <u>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를 포함한다]</u>----- <u>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u> 를 접수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u> 를 발급한 때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서를 포함한]</u>

현 행	개 정 안
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시설등완비 증명서발급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 ----- ----- ----- -----
⑤ (생 략) <b>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b>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u>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u>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신설〉</u>	⑤ (현행과 같음) <b>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b> ----- -----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 략) <b>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b>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생 략) <b>제10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b> ① (생 략) ② 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	1. ~ 3. (현행과 같음) <b>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등)</b> ① (현행과 같음) ②-----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b>제10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b>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현 행	개 정
<p>첨)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p> <p>④(생 략)</p> <p><b>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b>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u>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u>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신설〉</u></p>	<p>—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p> <p>③-----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 -----</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b> ①----- ----- -----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b>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b>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u>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u>,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u>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u>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b>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b>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u>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u>(전자문서로 된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p>



현행	개정
<p>할 수 있는 <u>서류</u>(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p> <p>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p>	<p>-----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p> <p>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p> <p>-----</p> <p>-----</p> <p>-----</p> <p>-----</p>
<p><b>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 <u>〈단서신설〉</u></p>	<p><b>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b></p> <p>-----</p> <p>-----</p> <p>-----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b>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 (생략)</b></p> <p>② 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p>	<p><b>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b></p> <p>②-----</p> <p>-----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p> <p>-----</p>

현 행	개 정
<p>1. · 2. (생 략)</p> <p>③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 · 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b>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 등록 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생 략)</b></p> <p>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u>재교부신청서</u>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재교부신청서</u>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p> <p>④(생 략)</p> <p><b>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b>소방 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 서식의 <u>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u>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u>서류</u>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단서신설&gt;</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공고</u>-----</p> <p><b>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 등록 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현행과 같음)</b></p> <p>②----- ----- ----- <u>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u>----- ③----- ----- ----- <u>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재교부신청서를 포함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b></p> <p>----- ----- ----- <u>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u>----- <u>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u> ----- [<u>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u>]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1. ~ 3. (생 략) ② ③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b>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3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단서신설&gt;</b>	<b>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b> ----- ----- ----- ----- ----- ----- ----- ----- ----- ----- ----- ----- ----- <b>소방시설관리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를 포함한다)-----</b> <b>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를 포함한다)-----</b>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b>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b>
1. ~ 6. (생 략) ②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b>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단서신설&gt;</b>	<b>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b> ----- ----- ----- ----- ----- ----- ----- ----- ----- ----- ----- ----- <b>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b>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 공공기관의 방화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 시행 안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19일자로 개정(대통령령 제19009호)·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장은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정기검사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제15조제3항).

따라서, 공공기관은 8월 19일부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현행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점검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점검 사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제도연구실 884-1863 ]